

[별표 6]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 1 조 목적

이 실천사항은 한국성전이 공정거래위원회「하도급거래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하도급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심의대상

- 1)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심의 : 당사와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의 10% 이상이 되는 협력사로 하도급 내부 보고 후 심의대상 협력사를 바꿀 수 있다.
- 2)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심의 : 신규등록 협력사, 기존 거래 협력사
- 3) 하도급 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
- 4) 상생 협력 활동 및 동반성장 지원방안 등

제 3 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1) 위원회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.
- 2) 하도급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팀, 상생 전담자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유관 부서장, 외부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다
- 3) 위원은 매년 1회 조직변경 등 반영하여 운영하고, 년 중 조직의 변경 사유 발생 시 구매팀장 또는 임원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
- 4) 월 1회 정기적으로 필히 개최해야하고, 심의 안건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
- 5) 위원회는 필요 시 협력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익명성을 보장

한다.

- 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해야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)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.
- 7)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, "안건 없음"으로 회의록 작성 보관할 수 있다.
- 8) 심의위원회 조직도



제 4 조 심의내용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)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

계약체결 심의대상 협력사에 대해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사전심의 건에 대하여 심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.

- ① 서면 계약서 발급 준수 의무
-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등
- ③ 부당한 특약 조건설정 여부, 부당한 기술자료요구 및 유용여부, 부당한 경영간섭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.

2)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

하도급 거래 협력사(신규등록 협력사 포함)에 대해 등록 심의, 등록

취소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
건 등을 심의한다.

3) 협력사 동반성장 방향 설정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추진한다.

제 5 조 사후관리

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의 결재를 (온라인
또는 오프라인 별지 서식의 회의록) 득한 후 상생추진 사무국으로 통보
한다.

위원회의 증빙문서는 심의 종료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2.09월부터 시행한다.

첨부 > 회의록 양식, 운영 조직도

내부심의위원회 회의록(한국성전)

하도급 거래 관련 개최한 내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.

- 하 기 -

□ 일시, 장소 : 2022. . : ~ , 회의실

□ 심의 결과

1.

2.

3.

상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.

< 위원회 참석 >

위원장

위 원

[세부 내역]

1-1 : 총 00건

업체명	심의 현황	심의 결과

2-1 : 총 00건

구분	업체명	심의 내용	심의 결과

3-1 :

심의 내용	심의 결과

내부심의위원회 운영 조직도 (한국성전)

목적 : 협력사와의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
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위반행위의
사전 예방을 위해서 내부 심의위원회 조직을 구성·운영함

1. 위원 구성 : 하도급 담당 임원(이하 위원장) 포함 3인 이상
(필요 시 유관부서장, 외부전문가 선임하여 참석)

※ 위원은 매년 1회 조직변경 등에 따라 반영하여 운영하고
연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 가능함

2. 운영 기간 : '22.09.01 ~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의회 필히 개최
회의 후 7일 이내 상생추진 사무국으로 회의록 제출

※ 조직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는 1년 단위 자동 연장됨

3. 위원회 조직도

